



국토교통부

보도 설명자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나라

배포 일시	2022. 8. 2.(화)		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	책임자	과장 강태석 (044-201-3364)
		담당자	사무관 김선미 (044-201-3376)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세대내 보일러 교체 등 경미한 경우에만 행위허가 없이 교체 가능합니다.

< 보도 내용 (동아일보 8.2일) >

- ◆ 아파트 중앙난방→개별난방 교체공사, 허가 없이 할 수 있다.
- 아파트 난방방식, 허가 없이 개조 가능

□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하여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없이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* 아파트 중앙난방 또는 지역난방 → 개별난방 교체공사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

○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미한 행위를 ‘난방방식의 변경’에서 ‘세대내 난방설비의 교체’로 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『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』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.

대한민국
지책브리핑

